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13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농업인의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에 농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위임근거 법령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법제처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 조문 순서 변경함 (안 제4조~제10조)

다. 「건축법」 등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용어 변경, 삭제조항 정비함 (안 제4조·제21조·제28조의2·제41조의2))

라. 법령 중복·재기재 등 삭제(안 제11조·제17조)

마. 가설건축물에 농막 추가함(안 제26조제2항제6호)

바. 건축물의 정기점검·긴급점검 정비(안 제32조제1항·제2항)

1) 위임근거 변경: 「건축법 시행령」⇒「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 수시점검⇒ 긴급점검

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2)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반영(안 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4조·제20조·제35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5조·제23조의2,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4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28.~10.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를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기존 제4조)제1항 중 “공무원”을 “군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 이내로”를 “3년으로”로 한다.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하며 제4조(기존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2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기존 제7조) 제6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2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기존 제7조의2)제3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제7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제7호·제8호"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6조로 하며,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보존)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 조 제목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2. 상주감리: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준용

제29조제3항 중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거창지역건축사회”를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지역건축사회”로 “득하여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32조 조 제목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건축물의 정기점검·긴급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왼쪽굽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8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제4항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으로 “구역”을 “구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란” 건축물의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를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③ (생 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③ (생 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3.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2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다.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2. (생 략)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7조(회의) ①~⑤ (생 략)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8조(회의)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② (생 략)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제7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제7호·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③ (생 략)	제10조(전문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생 략)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삭 제>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사항과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보존)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7조(전통문화 보존지역안의 건축물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4호 따른 도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면적 :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정한다.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

	인 단독주책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 설>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
제2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제2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른 "조례로 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2. 상주감리: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준용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⑤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 (생략) ③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거창지역건축사회(이하 "거창건축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재·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지역건축사회(이하 "거창건축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재·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지정·통지	**제32조(건축물의 정기점검·긴급점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초 침하, 왼쪽굽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8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건축지도원) ①~③ (생 략)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건축지도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6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란” 건축물의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를 말한다.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제31조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합계	검사대행에 드는 시간	
	현행	개정안
330제곱미터 미만	2시간	4시간
33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3시간	5시간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시간	6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5시간	8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6시간	10시간

비고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위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에 드는 시간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기술사 1명의 시간당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

2. 수수료 지급 기준(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가.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20퍼센트

나.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다.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50퍼센트(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라. 동별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50퍼센트(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